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5년 9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21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이재근(044-203-5690), 윤진영 사무관(044-203-5691)
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과장 윤종구(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5541)
제품안전정책과 과장 박형건(043-870-5410), 이종현 연구관(5415)

한·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

-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및 한중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관련 3개 약정 체결 -

-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한·중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기술장벽(TBT) 완화를 위하여 9.21.(월)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(AQSIQ)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을 위한 3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.
 - 「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」은 9.21.(월) 09:00,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과 中 AQSIQ 순다웨이 부국장(차관급) 간에 서명되었으며,
 - 「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」과 「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」은 9.21일 12:00, 국가기술표준원에서 中 순다웨이 부국장(중국 인증인정감독위원장 겸임)과 제대식 국표원장간에 서명되었다.
- 이번에 체결된 3개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① 「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」의 경우,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,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,
 - 특히, 적합성평가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.

- 이와 같은 한·중 제품 안전관리 협력은 한중 FTA 협정을 계기로 교역규모가 최대인 중국과 제품안전 협력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,
- 동 약정은 한·중 FTA TBT분야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조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·중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.

② 「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」의 경우, 한·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(中 CCC, 韓 KC인증 등)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,

- 상기 작업은 양국의 (i) 표준관련 정보교환 (ii)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(iii)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(iv) 약정 서명 (v) 이행의 절차로 시행되며, 양국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「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」의 경우, 한·중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,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.

- 먼저,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중복시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양국은 그간 활용률이 저조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(IECEE CB*)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'16.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**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,
- 아울러, 양국 인증기관간 인증용 샘플 송부 면제,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의 합리화, 공장심사 대행 등에 관한 협력을 이행토록 하였다.

* 중국은 현재 IECEE CB 성적서 중 일부 항목만을 인정하여 국내업체들이 애로를 호소, 반면 EU, 미국은 성적서를 대부분 인정

* IECEE CB(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) : 전기전자제품 관련 IEC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가입국간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는 제도

** (中)품질인증센터(CQC, 1개 기관), (韓) KTL, KTR, KTC 등 3개 기관

-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중국과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
 -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중 중국측과 양국의 인증기관간 표준, 시험 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상호인정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, 중국 수출 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 없게 됨. 양국 기업계에서 자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는 사항임
 - 이와 함께,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체결로 인해 양국간 소비자 제품안전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교역증대 상황에서도 안전요구 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·불량제품을 우리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수 있을 전망이다
-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체결된 약정이 신속히 추진되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·중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 발효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,
 - “전기전자제품분야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중국 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윤종구 과장(☎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☎043-870-55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약정 서명 일정 및 순다웨이 부국장 양력

일 자	시 간	내 용	비 고
9.21일 (월)	09:00 ~ 09:40	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면담 및 약정 체결	무역보험공사 (6층 중회의실)
	09:40 ~ 11:30	이동 (무역보험공사 → 국가기술표준원)	
	11:30 ~ 13:30	국가기술표준원장과 면담 및 약정 체결	국가기술표준원

성 명	순 다웨이(Sun Dawei; 孫大僞)
양 력	~2005.9 베이징(北京) 차오양(朝阳) 상검국 국장 국가 출입경 검험 검역국 검험 감독사 부사장/사장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검험 감독사 부사장/사장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(CNCA) 부원장 2005.10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당조성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(CNCA) 원장 2010.6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/당조성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(CNCA) 원장

① 소비자제품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

◆ 양국간 교역증대에 대비해서 표준에 대한 부적합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국간 소비자제품안전 협력을 추진

- 협력범위는 전기전자제품, 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제품으로 함
- 양기관(KATS, AQSIQ)은 규제 현안 및 법률 이행,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및 제조사 검사, 위험관리원칙 개발 및 이행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함
- 양기관은 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, 세미나 및 워크숍과 같은 공동업무 수행, 기술 및 행정관리 협력 등의 활동을 장려함
- 양기관은 부적합제품관련 정보의 상대국 통보, 부적합제품에 대한 조치결과 정보 공환 등에 대해서 특별히 협력하기로 함

②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을 위한 작업절차에 관한 약정

◆ 상호인정 추진절차를 정보교환, 협상, 협정서명 등 5단계로 규정하여 양국의 규제품목 소관부처별 상호인정 추진 활성화 계기 기대

- CCC와 KC품목에 대해서 상호인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의 강제인증에 대해서 양기관(KATS, CNCA)은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-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① 정보교환 및 범위 확인, ② 인증 절차, 제품목록, 강제인증에 사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 등 비교 분석, ③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협의, ④ 특정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서명, ⑤ 이행 등 5단계를 규정
- 이러한 단계들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융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
- 상호인정 코디네이터로 국표원(KATS)과 중국국가인감위(CNCA)를 지정

③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

◆ 조기성과를 위해서 국제표준화체계가 잘 확립된 전기전자분야 국제공인성적서(IECEE CB스킴) 상호인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함

- 양기관(KATS, CNCA)은 전기전자제품분야 적합성평가기관간 표준 비교, 표준에 대한 이해 교환, 시험 기술 교환을 장려함
- 양기관은 IECEE CB스킴을 활용하여 샘플송부 면제, 적합성평가 시간 및 비용 합리화, 공장심사 대행 등 절차개선을 장려함
- 양기관은 2016. 3. 1일 이전에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적합성평가기관*들을 장려함

* (中)품질인증센터(CQC, 1개 기관), (韓) KTL, KTR, KTC 등 3개 기관

- 양기관은 참여하는 적합성평가기관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폭넓은 규제품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함

참고 3

한-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관련 현황

□ 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

구분	KC인증 (한국)	CCC 인증(중국)
인증관리 방식	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	모든 품목
① 제품시험	- 안전인증제도 : ①+②+③	①+②+③
② 공장심사	- 안전확인제도 : ① (지정시험기관)	
③ 정기검사	- 공급자적합성제도 : ① (시험기관 선택 자유)	
안전관리 품목수	177 품목 (인증 46, 확인 69, 공급자 62)	105 종 (CCC인증)

□ 우리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

-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(CCC*)의 획득이 필요하나,
-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 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,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함
⇒ 중국에 제품 샘플 송부 등 시험인증관련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

□ 한-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

- 양국의 시험인정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(IECEE CB)체계를 활용,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상호인정 중심으로 추진
- *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,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
-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합의 추진

□ 전기전자제품 국가기관간 약정 및 인증기관간 MoU 개념도



□ 기대효과

-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: 국내기관이 CCC인증을 대행, 샘플을 국내 기관에 송부, 국내 시험 비용적용 가능
- KC와 CCC를 동시에 신청하여 진행하므로 편리
- 상호인정은 대중국수출 경쟁국 대비 아국만의 배타적인 시험인증 애로완화 수단이며, 대중국 시장점유율 제고에 기여할 전망

< 상호인정 전후 비교(국내업체 관점에서) >

구분	현행	상호인정 이후
CCC, KC 신청	· CCC(CCIC 코리아, 중국기관), · KC(국내 인증기관)으로 이원화	· 국내 MoU기관에 KC, CCC 동시신청
샘플 송부	· 중국으로 샘플 송부 (IECEE CB성적서 제출 시)	· 국내 MoU기관으로 샘플 송부
IECEE CB성적서	· 중국은 전기안전 일부항목만 인정	· 국내발행 전기안전성적서 중국이 인정
공장심사 (시범사업 이후)	· CCIC 코리아 독점	· CCIC코리아, MoU기관 등 경쟁체계